

---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20.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0.1.30.(목) 10:00 ~ 11:2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 (2020-4) : '18.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에 대한 정보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 김포시에 통보(통지)한 문서
  - (2020-5) : '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고양시 시설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의견)
  - (2020-6) : KSAM(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승인 서류 일체 /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KSAM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2020-7) : 청구인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2019-000호) 관련 종료구청(보건위생과)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0-4) : 기각 (비공개)
  - (2020-5) : 기각 (비공개)
  - (2020-6) : 부분인용 (부분공개)
  - (2020-7) : 부분인용 (부분공개)

## 【 개 회 】

〈○○○ 위원장〉

- 제1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4건입니다.

매 안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 안  
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의위원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안번호 2020-4 이의신청 】

안건명 : '18. 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상세정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 김포시에 통지(통보)한 문서 등

【 의안번호 2020-5 이의신청 】

안건명 : '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고양시 시설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의견)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0-4호, 5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소관부서에서 오신 팀장님, 주무관님, 변호사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 ○○○입니다.

〈○○○ 변호사〉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입니다.

〈○○○ 위원장〉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20-4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외 다수의 문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는 현재 재판중인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그 외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 및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였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0-5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등 5개 지역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문건 및 다수의 문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송파구 외 4개 지역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고, 그 외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동법 14조에 따라 부분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방금 들으신 안건 설명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 변호사>

○ 네.

<○○○ 위원장>

○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지금 1호 다른 법률, 4호 진행 중인 재판, 6호 개인정보 등에 의해서 비공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변호사>

○ 지금 저희가 비공개 처리한 부분이 저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에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시설에서 피해당사자라든가, 행위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을 진술이라든지, 장애인의 특성이라든지, 저희의 판단내용 같은 것을 기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에 이런 조사했을 때 그 사항이 비밀에 해당되고, 그런 사실을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공개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호 사유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4호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서 저희 조사결과를 가지고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는데 그 징계처분에 대해서 지금 불복해서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6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같은 경우 일부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고 종사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정보도 이 시설이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 분들이 거주하는 집 주소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하는 직장 주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관한 정보도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진술내용 같은 부분도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이외에도 다른 구청에서 많이 공개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공문 표지 부분을 이름을 가리고 공개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서에 따라서 이런 보고서가 나갔는지를 청구인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 문서번호를 들먹이면서 다시 공개청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한테 12월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가 지금까지 25건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저희 업무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법문상으로는 5호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권위에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 같은 경우도 5호에 따라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있고.

이런 조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분들이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 만약에 다른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참고인들한테 충분한 진술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호 사유로 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지금 이 조사보고서에서 고발조치를 하거나 시설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혹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청구인이 불만을 가져서 청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사>

- 이 조사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조사보고서에 따라서 고발조치는 하였고, 어떤 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벌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권고 드린 부분도 어떤 곳에서는 처분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처분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조치의견 정리는 기공개가 된 것이죠?

<○○○ 변호사>



○ 네,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했다, 지자체에 통지를 했다, 아니면 법원에다가 징계 권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에 응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85조2의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까?

〈○○○ 변호사〉

○ 네.

〈○○○ 위원〉

○ 업무분장부분은 각하해야한다고 그랬는데요, 청구인이 이의신청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겠다. 누가 담당하느냐’를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모르겠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개가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변호사〉

○ 저희 조직은 정원이 11명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뒀고, 내부적으로도 누가 어떤 업무를 분담하는지는 자료가 없고, 업무가 들어오면 관장이나 팀장 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요건이 결여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 변호사〉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것은 만약 각하를 한다면 사유를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것을 다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겠죠.

<○○○ 팀장>

○ 정보가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업무분장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름과 담당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을 이미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청구인한테 보내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라고 통지만 한 겁니까?

<○○○ 주무관>

○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쫓다면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

○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것을 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 팀장>

-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오면 예를 들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지 그 사건이 미리 누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드리는데,

〈○○○ 위원〉

-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업무분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위원〉

- 예를 들자면 도봉구에서 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님이 담당하느냐, 그것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맞아요.

〈○○○ 위원〉

- 그때그때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응은 해 주시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장〉

-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견을 나눈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해 주시죠.

〈○○○ 위원〉

-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주인들의 인원수 자체가 많지가 않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는 비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할분담도 이 이상 자세한 것은 유동적인 것인데 그것은 전화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을 약간 분리해서 의견을 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이의신청한 건 중에 김포시 시설조사보고하고 송파구 등 5개구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업무분장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김포시는 애초에 원청구가 없었어요. 이의신청할 때 새로 들어온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각하를 할 것인지 의견을 그렇게 나누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 위원님 의견은 이 두 심의대상은 기각, 나머지는 각하,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건가요?

〈○○○ 위원〉

- 네.

〈○○○ 위원장〉

○ 다른 분들도 의견 주세요.

〈○○○ 위원〉

○ 김포시 조사보고는 기각이고요. 저는 1호 사유에 의해서 기각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은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각하, 그렇게 각하 이유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도봉구, 김포시는 새로운 청구니까 각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5개 지역 시설도 똑같은 것이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저도 1호 사유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똑같습니다.

〈○○○ 위원장〉

○ 그 사유는 1호만 지금,

〈○○○ 위원〉

○ 6호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6호도 관련 있어 보이고요.

〈○○○ 위원장〉

○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조사보고 2개에 대해서는 기각이고요.

지금 4호는 정보가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4호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5호 아까 얘기했던 것도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1호, 6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의견이 모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포시 시설조사보고하고 송파구 등 5개 지역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1호와 6호 사유로 기각을 하고요. 업무분장에 대한 정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에 대해서는 각하인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의견이 지금 3명, ○○○ 위원님, ○○○ 위원님과 저이고, ○○○ 위원님은 정보 부존재이기 때문에 각하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각하가 되겠네요.

그러면 4호, 5호를 저희가 일괄상정을 했었는데 의견이 지금 4호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각, 일부는 각하 이렇게 되고, 5호는 기각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2020-4호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안번호 2020-4호는 기각과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20-5호는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2020-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안번호 2020-6 이의신청 】

안건명 : KSAM(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승인 서류 일체,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KSAM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위원장>

○ 2020-6호 동물보호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소관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세요?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입니다.

<○○○ 주무관>

○ 동물보호과 ○○○입니다.

<○○○ 위원장>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20-6호 동물보호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의 서울시 승인 서류 일체 및 동

단체가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요청 정보는 해당 단체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해당 단체 임원과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을 위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안건 설명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죠?

<○○○ 팀장>

○ 네.

<○○○ 위원장>

○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은 신청한 정보가 많아서 저희가 정보별로 나누어서 주심위원님 두 분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 ○,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전체를 다 비공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승인서류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신청서, 임원회의록,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정보는 다수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위 서류들이 이 단체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승인서류 일체, 단체소개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한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 주무관>

- 이 민원인이 요청하실 때는 주로 예산 관련 부분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체서류를 요청하셨고,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니까 자기가 예산 그쪽이 필요하다.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 위원>

-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세요?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지금 승인서류 일체인데요, 그것을 보면 등록신청서, 정관, 회의록,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위촉장,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임대차 계약서, 회원명부인데, 그럼 여기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 서류는 어떤 겁니까?

<○○○ 주무관>

- 개인정보 다 저희가 가리고, 정관이라든가 회의록도 가리고, 본인이 이사였기 때문에 회의록도 다 참석한 내용이고 하니까 그것은 공개는 해줄 수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여기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체 비공개

할 때의 사유를 어쨌든 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근거를 주시면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 주무관>

○ 그리고 제3자 의견으로 KSAM은 비공개할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공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이게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팀장>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신청서나 정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청인은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고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 위원>

○ 공개하실 것이라면 처음에 공개를 하셨어도 되는 것 같은데 사유를 굳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지금은 이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팀장>

○ 저희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내용도 지금도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청구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괄 비공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건건이,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서를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몇 호 사유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는지, 정관을 비공개한다면 몇 호인지, 이렇게 건건이 다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일괄 비공개, 그리고 비공개 사유도 영업상·경영상 비밀 하나, 이렇게만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다 공히 가지고 있으니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1번 등록신청서부터 16번 통장사본까지 쪽 보시고 이게 공개해도 되는지, 만약에 비공개라면 몇 호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를 판단하고 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 정보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는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비공개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발원자명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촉장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뒤에 인감증명서나 이

것은 비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체소개서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종의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임원으로서 복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있잖아요. 지금 이 청구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산부분인데 세세한 것을 원하지 이런 식으로 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제3자 의견조회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라서 되게 민감하게 비공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공개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 팀장〉

- 신청인이 이사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게 굳이 비공개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세세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지출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주 단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일종의 단체 전체적인 영업상이라든지 경영상 비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 회원명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개인정보를 가리면 어떻습니까?

<○○○ 팀장>

- 가리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려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리면 정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청구인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청구인이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청구인 사정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개인정보를 가리면 임대차계약서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부분만 가리면 되는 겁니까?

<○○○ 위원>

- 개인정보가 전대인도 있거든요. 전차인. 그러니까 사실 등기부등본 떼보면 소유자 이름 다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만 가리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문제는 수입·지출예산서, 이것이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와 공개됐을 때 정당한 이익을 현저한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말씀하시는 길에 11번부터 또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 팀장>

○ 네. 11번 보조금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 위원>

○ 지금 여기는 청구인이 제일 원하는 정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6번 해 가지고 신청단체의 자산현황, 이 부분이 제일 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지방보조금 지급됐던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9년 1년만 하고 끝난 사업입니까?

<○○○ 팀장>

○ 1년 단위 사업입니다.

<○○○ 위원>

○ 그러면 다시 갱신되거나 또 새로 사업신청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죠?

<○○○ 팀장>

○ 올해 새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단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위원>

○ 그러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았네요?

<○○○ 팀장>

○ 지금은 사업계획 수립 중이고 2월 중에 공모할 생각입니다.

<○○○ 위원>

○ 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될 겁니까?

<○○○ 팀장>

○ 거의 내용은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작년에 경쟁이 있었습니까?

<○○○ 팀장>

○ 네, 있었습니다. 원래는 총 사업예산이 2억인데요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각각 1억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제일 관건이 요 사업계획인데요 이 사업내용들, 앞으로 뭘 하겠다. 질병관리도 하고, 입양 홍보도 하고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팀장>

○ 아무래도 이게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다른 경쟁자가 보고 베낄 수 있다 이것이지요?

<○○○ 팀장>

○ 네. 물론 청구인이 이 단체 소속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고려한다 하더라도,

〈○○○ 위원〉

○ 보통 보면 이런 용역 낼 때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충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제안요청서는 저희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각 단체별로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을 맞춰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물론 단체마다 좀 더 다른 차별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

○ 교부신청서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죠.

〈○○○ 팀장〉

○ 교부신청서는 저희가 작성한 양식에 따른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소개서는 앞에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단체소개서는 아까 공개한다고 하셨고. 관리카드 이것도 개인정보만 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팀장〉



○ 네. 청년이행서약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저희 정해진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 위원〉

○ 그렇죠. 16번 통장사본하고 보조금관리카드 사본은, 이것은 금융정보니까 비공개가 맞을 것 같고요.

〈○○○ 팀장〉

○ 네.

〈○○○ 위원〉

○ 수입·지출예산서가 보조금 받는 데 있어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서류잖아요?

〈○○○ 팀장〉

○ 보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단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맞지는 않습니다.

〈○○○ 위원〉

○ 단체소개서가 지금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가 뒤에 조직도가 붙어있어서 다른 자료라고 들어와 있는 겁니까?

〈○○○ 팀장〉

○ 네. 승인서류에서의 단체소개서는 그 단체를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조직도가 필요했던 부분인 것이 고요.

입양사업 같은 경우에 단체소개서는 저희가 좀 더 간략한 양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내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

- 보조금사업계획서 11번,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 청구한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것 같은데요.

〈○○○ 팀장〉

-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체에 어떤 차입금을 했다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속에서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공개를 해도 본인한테 실익은 없는 부분인데,

〈○○○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 11번 보조금사업계획서를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신청단체 자산현황’, 이것은 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공개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그냥 여기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정리해 주시죠.

〈○○○ 위원〉

-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고 다 공개고요. 6번 단체소개서도 개인정보가 있다면 비공개지만 없으니까 공개. 사업계획서도 공개고요. 수입·지출예산서는, 이것은 사실 좀 민감할 수 있어서 저는 애초에 사유 근거대로 9조1항7호에 해당돼서 저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번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면 될 것 같고. 10번은 전부 다 개인정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 부분은 11번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는 7호 관련으로 비공개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번은 통장사본, 보조금관리카드 사본,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물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가리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 지금 12번, 14번, 15번에는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12번, 14번, 15번은 부분 공개고, 13번은 공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11번, 16번은 비공개고요.

〈○○○ 위원〉

- 지금 사업계획서의 경우에 청구인이 이 단체에 이사로 재직했었고, 갖고 있었던 자료인 것이죠?

〈○○○ 팀장〉

- 일단 승인할 때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보조금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송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임원에서 해직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빼고 다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 위원장〉

- 단체 운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 팀장〉

- 주로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지원단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운영이 되는,

〈○○○ 주무관〉

- 후원금도 받고요.

〈○○○ 위원〉

- 저는 이분한테 비공개의 실익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일반인이라면 또 모르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공개 자료도 열람을 허용한다라든가,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위원장〉

- 지금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은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이신 부분만 ○○○ 위원님이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8번 사업계획서 11번의 경우에 열람을 통해서 공개는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 그림 8번, 11번은 공개로 의견을 주시되 열람형태로?

<○○○ 위원>

- 네.

<○○○ 위원장>

- 저는 ○○○ 위원님, ○○○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3명이 다수의견으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13번은 전체공개이고요. 그리고 8번은 7호에 의해서 비공개, 10번은 6호에 의해서 비공개, 11번도 7호로 비공개, 16번도 이게 법인통장이니까 7호에 의해서 비공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 정보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일부 부분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의안번호 2020-6호는 일부 인용, 일부 부분인용, 일부 기각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20-7 이의신청 】

안건명 : 청구인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2019-000호) 관련 종로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

<○○○ 위원장>

○ 의안번호 2020-7호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소관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입니다.

<○○○ 주무관>

○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입니다.

<○○○ 위원장>

○ 간사께서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20-7호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과정에서 종로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접수한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는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따라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안건 설명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 팀장>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구된 것, 그리고 비공개된 정보가 영업신고증하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변경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앞에 나와있었던 이 문건의 일면에도 나와있다시피 영업신고증은 우리가 식당 가면 다 거기 붙어있는 것이라서 사실 이것은 청구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대중에게조차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영업신고증에 나와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대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영업소 명칭,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청구인이 임대인이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여서 이게 비공개할 만한 정보인가 하는 의문

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다라고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팀장〉

- 우선 이 내용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년월일이나 그분의 성명이나 아니면 상호 변경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인허가번호 등을 통해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그게 혹시 실제로 열람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정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저희 작성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는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청구자가 우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를 저희에게 정확히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익 등을 비교형량을 해야 될 텐데 이 경우에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저희가 참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영업주 성명과 상호변경 이력 등에 대해서 애초에 저희가 이 정보를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만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부검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종로구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이 어떠한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침해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 사실 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임대인이고 여기는 임차인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이 있었는데 결렬된 상황에서 제목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업신고증인지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문건이나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청구한 것이 아닌가 추측은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원칙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이미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거나 아니면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특별히 이것이 해당하는지,

〈○○○ 주무관〉

- 이 분쟁조정을 담당한 실무자 ○○○입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임대인인 신청인 임준원 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받아보게 된 사항이었고요.

그 위원회 자리에서도 이분한테 ‘여기 내용에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서 참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라고 거기서 다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 위원장〉

- 영업신고증을 왜 보라고 했을까요?

〈○○○ 주무관〉

- 이분께서는 임대인인데 이분이 직접 영업을 하셨었습니다.

〈○○○ 위원장〉

○ 변경사항에 지금 들어있는 게 결국은 자기 정보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임대차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고 임차인이 그 당시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임차인께서 영업장 이름을 바꿨는데요.

영업신고증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에 가면 다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청구인도 그 가게를 자주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했을지 몰라도 아마 대충은 확인 했을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라면 말이 틀려지겠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분의 요청으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 분들이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었고, 또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사항이어서 이게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오픈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자료를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서울시가 이 내용을 공공데이터로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식품위생업소현황이라는 공공데이터 전수데이터에 보면 영업신고일자, 대표자명, 영업소명,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 영업장 면적, 내국인, 외국인, 이 사항이 사실 공공데이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현황. 100만 데이터가 넘거든요. 폐업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 팀장>

○ 그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 위원장>

○ 지금 결재문서 본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구인께서 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자료제공 협조에 대한 회신’ 이 문서가 영업신고증에 관한 것이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본문은 공개하고.

<○○○ 위원>

○ 저도 말씀하신 본문 공개하고, 여기 공무원 이름들은 법에 의해서 다 공개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영업신고증은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여기에 보면 성명, 생년월일

<○○○ 주무관>

○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는 것도 주체가 저희가 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를 하셨으니까 개인정보만 가리고 서울시는 이 정보가 누가 애초에 소유자냐, 권한자냐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한 후에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이면 링크를 주면서 “더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찾아보렴.”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닐까.

<○○○ 위원장>

- 대표자명, 생년월일만 그게 개인정보니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제 생각에는 개인식별정보라고 하면 영업소 이름까지는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 영업소 이름은 개인식별정보가 아니죠.

<○○○ 위원>

- 그래서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서울시도 문제 될 게 없고,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재문서 본문과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 변경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재문서 본문은 공개하고, 영업신고증 사본과 변경내용에서 개인정보만 비공개, 나머지는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으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 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0-7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것으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9분, 회의 종료】